

# 각종위원회 규정

2001년 3월 24일 개정

2013년 11월 1일 개정

## 1. 목적

본 규정은 정관 제 22조(각종위원회)에 의거한 각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각종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각종위원회의 종류

각종 위원회는 본회의 특정한 업무집행을 위한 심포지움 위원회, 도서출판위원회, 작품전시위원회 등의 한시적 특별위원회와 학술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학술연구위원회로 구분한다.

## 3. 각종위원회의 구성

- 1)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업무집행의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필요할 경우, 회장이 활동기간, 조직구성, 운영방법 등을 집행이사들과 상의하여 설치한다.
- 2) 학술연구위원회는 분야별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3) 분야별 연구회는 해당분야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가진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, 회장은 목적, 활동계획, 인적 구성, 해당 연구회의 회칙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연구회 구성을 승인할 수 있다.
- 4) 전 3)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구회가 승인된 경우, 회장은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## 4. 각 연구회 회원의 자격

각 연구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한국조경학회 회원으로 한다. 필요할 경우 비회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## 5. 각 연구회의 임원선출과 조직의 구성

- 1) 각 연구회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회장, 총무 등의 임원선출과 활동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임원은 한국조경학회 이사로 보한다.
- 2) 각 연구회의 필요한 조직의 구성과 임원선출은 해당 연구회에서 행한다.
- 3) 각 연구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## 6. 각 연구회의 의사결정

- 1) 각 연구회의 조직의 구성, 임원선출, 회원의 가입승인, 연구활동 등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각 연구회 회칙을 따른다.
- 2) 각 연구회는 회원의 활동, 출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,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할 수 있

다. 단, 그 요건과 내용은 해당 연구회 회칙을 따른다.

## 7. 각 연구회의 활동

해당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) 본 학회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학술활동
- 2) 해당 연구회가 추구하는 각종 학술활동
- 3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학술활동

## 8. 재정

각 연구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- 1) 자체 수입
- 2) 본 학회의 지원금
- 3) 회원의 부담
- 4) 기타의 수입

## 9. 각 연구회의 의무

각 연구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1) 각 연구회의 예산안을 포함한 연간활동계획 및 결과의 보고
- 2) 해당 연구회의 규정, 조직 및 임원, 회원의 변경사항
- 3) 기타 학회의 건전한 학술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

## 10. 각 연구회 활동의 권고

회장은 각 연구회의 건전한 학술활동을 권고, 조장,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## 11. 각 연구회의 해산

회장은 각 연구회의 활동이 다음 각 1), 2)호의 경우 그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, 연구회의 해산에 대하여 그 경위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- 1) 본래의 연구회의 활동이 본래의 목적에 심하게 일탈할 경우,
- 2) 연구회의 활동이 심히 부진한 경우,
- 3) 연구회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,
- 4) 연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진 해산을 하는 경우

## 부 칙

제 1조 이 규정은 200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개폐한다.